

「2025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 역량에 맞는 다각적·전략적 지원 통해 농기자재 수출성공률 극대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66개사 내외

- 8개 품목: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항목** : 수출 관련 아래 14개 항목

수출기업육성 14개 지원 항목

해외영업지원	수출 컨설팅	홍보/광고
제품 현지화	국제 운송	해외 인허가 취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보험·보증	등록비/대행비
통번역	시장조사 지원	디자인 개발
테스트비	역량 강화교육	

□ 지원기준

○ (지원 기준) 최대 50백만원/기업 (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종 정산금액 기준의 50%까지 지원

** 지원 분야별 배정 기업 수는 지원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기업 수
스타트업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20백만원	32
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50만불	30백만원	12
성장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50~200만불	40백만원	10
글로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	50백만원	12

□ 추진일정

신청·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협약체결	결과보고/정산
수출(예정)기업	내부심사	내·외부 전문가 심사	선정기업	公社/참여기업
농산업수출 종합지원시스템	신청자격 및 계량평가	내·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보고 및 정산
'25. 1월~2월	2. 10.(월)	2. 13.(목)	2월 말	~'25. 12.

○ 신청·접수 : '25. 1. 20.(월) ~ '25. 2. 7.(금)

* 기간 외 접수 시 불인정

○ 1차 심사 : 적격심사(지원업체 품목 적합성, 지원제외 대상 검토 등) 및 (별첨 1)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기반 계량평가(45점) 실시

○ 2차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내·외부 전문가(평가위원회) 비계량 항목 평가

○ 신청방법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www.agroex.or.kr) 통해 신청·접수

○ 증빙서류

① (필수) 사업계획서 1부(분량 7p 이내)(시스템 통해 제출)

* 제한 분량 초과 시 평가 점수 감점

② (필수) 온라인 -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 최근 3개년('22~'24)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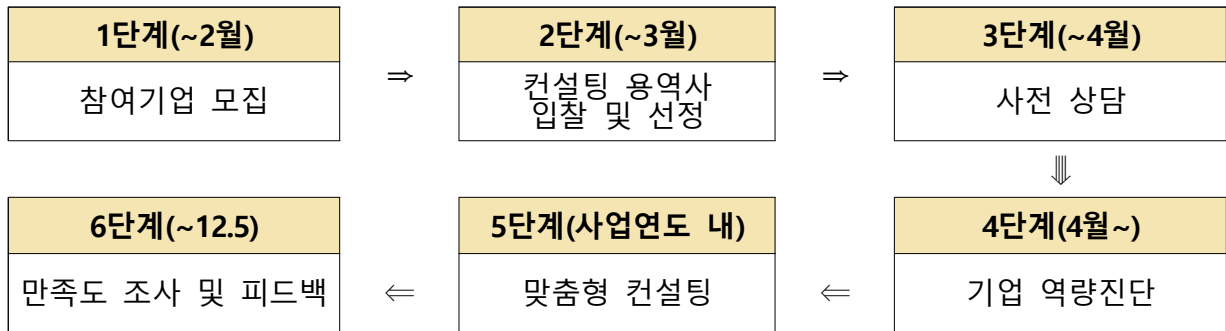
** 동의 방법 [붙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Tmy Data)] 참고

※ 정보제공 미동의 시 계량점수 해당 평가항목(수출성장기업, 수출실적) 0점 처리

③ (선택) 계량평가 항목별 증빙자료(시스템 통해 제출)

□ 맞춤형 컨설팅 지원(연계 지원)

- 개요 : 기업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 컨설팅 지원
- 모집규모 :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50개사
-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수출기업육성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연계 지원 여부 항목 체크 표시하여 사업 신청
- 신청 기업이 모집규모(50개사) 초과 시 수출기업육성 최종 평가 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참고사항

- 모집 규모 미충족 시 2월 내 별도 공고 예정
- 연계 지원 희망 시 사업계획서 內 컨설팅 요청사항 작성 필수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
(061-338-5748, smart_ag@ekr.or.kr)

□ 유의사항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2024) 수출실적 기반 지원분야 선택하여 지원**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산출된 자료만 인정
- 2차 평가 진행시 ‘사업계획서’ 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할 것
- 사업비는 「수출기업육성 수행기관 리스트」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특성상 별도 기관을 통해 운영해야만 할 경우 公社와 협의 후 집행 가능하다.
- 지원금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제한조치를 위반한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지원 사업에서 제외
-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
(061-338-5750, smart_ag@ekr.or.kr)

2025. 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별첨 1】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구분	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량 (45)	제품 경쟁력	- 국내외 제품 인증·등록 취득 실적 및 특허 보유 (PCT 출원, CE인증 등)	10	개당 5점(최대 10점)					
	수출 성장기업	- 2023년 대비 2024년 수출액 증가율 * '24년 신규 수출 : 9점 ** '23년, '24년 모두 수출실적 0 : 6점	15	50% 이상	10~50% 미만	0~10% 미만	0% 미만		
				15	12	9	6		
	수출실적	- 전년도 수출실적	10	20만불 이상	10~20만 불 미만	5~10만불 미만	5만불 미만		
10				8	6	4			
수출 준비도	-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보유 여부	10	2개 이상		1개		없음		
			10		5		0		
비계량 (50)	수출역량	- 제품 특성 및 경쟁력, 비계량 수출성과(MOU 등)	5	A (10)	B (9)	C (8)	D (7)	E (6)	
	사업계획	- 사업 추진 배경, 계획 및 목표 등	30	A (30)	B (27)	C (24)	D (21)	E (18)	
	발전가능성	- 사업을 통한 수출 확대 및 발전 계획	15	A (15)	B (13.5)	C (12)	D (10.5)	E (9)	
가산점 (5)	① (혁신) 창업초기기업(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개시일 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 개시일 7년 미만),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기업		3	※ 1.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항목 내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2.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허위정보 및 성과 기재 시 0점 처리 * 가점서류 사본 제출 :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 현지 실증(테스트베드) 완료 증빙(현지 공신력 있는 실증 관련 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공식 실증 결과보고서 등), 벤처기업 인증서, 7년 미만 신생기업(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② (사업성과 제고) 현지 실증(테스트베드)지원 사업 수행 완료 기업('22~'24, 3개년 인정), 2024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2024년 K-Food+ 수출탑 수상기업 *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관련 협회 추천기업		5						

<참고>

- 증빙서류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 불인정
- 계량 평가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에 조회되는 실적만 반영함
(※Tmydata 정보 제공 미동시 수출성장기업 및 수출실적 항목 평가 0점 처리)
- 2024년도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업의 경우, 신청 시 우선 선발
-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협회 추천기업은 협회 추천서 공문을 통해서만 가점 부여
- 평가방법 : (계량) 제출서류 기반 운영기관 내부평가, (비계량) 수출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한 외부평가
-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인증 외 타분야 (기업경영 등) 인증 불인정
(ex.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등 미적용)

【별첨 2】 협회추천서 서식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협회 추천서

협회 정보			
분야(품목)		협회명	
추천 순번		담당자	
기업 정보			
기업명		지원분야	(스타트업/유망기업/성장기업 /글로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지원금 (국고보조금, 자부담 포함)	원
추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준비도 수출가능성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자 이내)		

상기 내용과 같이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지원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협회명 (직인)

※ 협회 추천 기준(안) - 추천서 작성 완료 시 삭제부탁드립니다.

항목	기준
수출준비도	국내외 인증취득 실적 및 제품관련 특허 보유
	전년도 수출실적, 수출실적 증가율
수출가능성	품목·국가 수출확대 가능성 등 (해외 네트워크 기반 해외마케팅 활동 등)
	사업 운영방향 및 추진내용 등 적정여부
정부정책 협조성	정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적극성 및 협조성

【별첨 3】 협회별 추천 가능 기업 수

품목	담당 협회	협회 추천 가능 기업 수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4
비료	한국비료협회	2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2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2
농약	한국작물보호협회	2
종자	한국종자협회	2
시설자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2
	한국스마트농업시설협의회	2
친환경자재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4
사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4
동물용의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4
합계		30

* 협회별 추천 가능 기업 수는 회원사 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등을 참고하여 결정 후, 협회별 개별 안내

** 협회 추천 가점 대상은 협회에서 公社로 보내온 공문만 인정함

*** 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 부여

【별첨 4】 사업계획서(양식)

연계 지원 여부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 스타트업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글로벌기업

사 업 계 획 서

〈작성 지침〉

- ◆ (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사진, 그림,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
- 실무적 차원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시
- ◆ (형식) 설명식 혹은 개조식 등 자유형식, 분량은 **7p 내**로 한다.
제목 아래의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심사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작성요령 참조, 줄간격 150%)

- ※ 가. 제출한 내용은 선정평가 이외에 사용하지 않음
- 나. 제한 분량을 넘어갈 시 1p당 5점 감점
- 다. 제출 시 작성 지침은 삭제

1 수출역량(5)

(※ 작성요령)

- 차별화된 제품 특성 및 경쟁력, 비가시적 수출 성과(MOU 등) 기술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4pt

* 맑은고딕 12pt

2 사업계획(30)

(※ 작성요령)

- 기업의 대내·외적 수출 환경, 사례 추진 배경 및 목적, 기업의 목표 및 비전 의지 기술
- 해당 사업을 통한 주요 추진 내용 기술(항목별 중심)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4pt

* 맑은고딕 12pt

3 발전가능성(15)

(※ 작성요령)

- 해당사업을 통한 향후 수출확대 및 지속적인 수출가능성을 담은 계획 기술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4pt

* 맑은고딕 12pt

4

자금 집행계획

	구 분	집행금액(원)	집행내용
사업비	해외영업지원		
	수출 컨설팅		
	홍보/광고		
	제품 현지화		
	국제 운송		
	해외 인허가 취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보험·보증		
	등록비/대행비		
	통번역		
	시장조사 지원		
	디자인 개발		
	테스트비		
역량 강화교육			
	합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참가 서약서

당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공사 주관으로 참가(개최)하는 지원사업 참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사업 기간 중 현지법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사업담당자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공사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당사는 지원사업 선정시 공사의 사업관리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일정 불참석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당사가 부담한다.
4. 당사 제품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당사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을 포기할 경우 사업중 발생 비용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당사는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을 준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외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참가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는다. 국고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지원금을 전액 환불하며 향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6. 당사는 귀 공사의 지원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
7.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제한 등 귀 공사의 소정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 일정에 불참한 경우
 - 사후 공사가 진행하는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등 사후관리 요청사항에 불참한 경우
 - 귀 공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한국농어촌공사 귀 중